**SRC 동아리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동아리 명칭]**

1. 본 동아리의 명칭은 “SRC(Soongsil Romanee Conti)”로 한다.

**제 2조 [목적]**

1. 본 동아리는 올바른 대학 음주 문화 양성 및 와인 문화 공부를 목적으로 하며, 이 외의 활동들 또한 이 목적에 있음을 명시한다.

**제 3조 [동아리 소재]**

1. 2023년 현재 학생회관 243호를 소재지로 한다.
2. 1항은 동아리연합회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운영진 회의를 거치지 않고 바뀔 수 있다.

**제 2장 임원진 및 운영진**

**제 1조 [임원진]**

1.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총무로 정의한다.
2. 회장은 동아리 내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3. 부회장은 회장 업무 보조 및 동아리 내부 행정을 수행한다.
4. 총무는 동아리 회비관리를 수행한다.

**제 2조 [임원진의 임기]**

1. 임원진의 임기는 최소 1학기이며 운영진의 투표 하에 학기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2. 방학 기간 동안의 동아리 운영은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임원진이 이어서 한다.
3. 임원진의 선출은 운영진 회의로 선출된다.

**제 3조 [운영진]**

1. 운영진은 임원진 및 집행부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 집행부원은 임원진 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제 5조 [운영진 회의]**

1. 운영진 회의는 학기에 2회 이상 진행한다.
2. 운영진 회의 결과는 전체 동아리원에게 공지한다.

**제 3장 회원**

**제 1조 [회원 자격 및 의무]**

1. 정회원 대상은 본교의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모든 동아리 회원은 매 학기마다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3. 모든 동아리 회원은 동아리 활동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4. 모든 동아리 회원은 운영진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5. 모든 회원은 동아리 뿐만이 아닌 교내에서 사회적 미풍양속에 저촉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6. 동아리 회원이 아닌 외부인의 동아리방 출입을 금하며 동아리원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 2조 [회원의 가입]**

1.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학우는 임원진 및 그 외 운영진에게 자신의 이름, 학과 명, 학번 등 개인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2. 가입 가능 시기는 제한을 두지 않되 임원진 판단 하에 상황에 따라 가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임원진이 회원 가입을 승낙한 학우로부터 회비 납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동아리 회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한다.

**제 3조 [회원의 탈퇴]**

1.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로 탈퇴가 가능하다.
2. 탈퇴하였던 학우는 임원진 판단 하에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3. 다음의 경우 임원진은 회의를 통해 회원을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4. 타당한 이유 없이 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5. 법규, 사회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 혹은 학교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동아리의 품위를 떨어뜨렸을 경우
6. 운영진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동아리방 비밀번호 및 동아리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8. 동아리 탈퇴 시 자진탈퇴에 한하여 임원진 회의 하에 회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
9. 동아리 탈퇴 시 제출한 개인정보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 4장 회의**

**제 1조 [회의]**

1. 회의의 종류에는 임원진 회의, 운영진 회의, 총회가 있다.
   1. 임원진 회의는 임원진만 투표가 가능한 회의를 의미한다.
   2. 운영진 회의는 운영진만 투표가 가능한 회의를 의미한다.
   3. 동아리 회의는 동아리 회원만 투표가 가능한 회의를 의미한다.
2. 회장은 임의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의 종류와 안건을 정할 수 있다.
3. 단, 회칙에 어긋나는 범주에서의 개최는 불가능하다.

**제 2조 [총회]**

1. 총회는 학기 중 1회 이상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원진의 판단 하에 총회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안건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총회의 참여 대상은 동아리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4. 총회의 참여는 자유이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5장 재정**

**제 1조 [수입]**

1. 동아리의 수입은 회비로 정하며, 이는 본 동아리의 활동비로 사용된다.

**제 2조 [회비]**

1. 회비는 정기회비와 비정기회비로 구분한다.
2. 정기회비는 정기활동 및 전반적인 동아리 운영을 위한 금액으로 청구하며, 금액은 매 학기 5만원으로 규정한다.
3. 운영진 회의를 통해 정기회비의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와 금액을 활동 시작 이전까지 공지해야 한다.
4. 비정기회비는 정기회비를 제외한 모든 수입으로 규정하며, 필요시 청구될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5. 비정기활동 이후 남은 비정기회비 차액의 경우 정기회비에 포함시킨다.

**제 3조 [결산보고]**

1. 총무는 회비 사용내역을 성실히 기록해야 한다.
2. 동아리 회원은 회비 사용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무는 일주일 내로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제 6장 동아리 등록**

**제 1조 [등록]**

①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

**제 7장 부칙**

**제 1조 [회칙 발효]**

1. 본 회칙은 2023.04.01 부터 발효된다.

**제 2조 [회칙 개정]**

1. 회칙 개정 요구는 동아리 회원이 요청할 수 있으며 임원진회의를 진행하여 승인 시 개정을 진행한다.
2. 단순 오탈자 정정은 회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3. 회칙 개정 시 새로이 발효된 회칙은 제 7장 1조에 발효 일자를 기입한다.

**제 3조 [이외사항]**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진 회의에 따라 처리한다.